

공정한 약관 작성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소관부서	컴플라이언스파트
	시행일	2019. 11. 01.
	문서번호	CGV 컴플-CL-03-20191101

2019년 11월 01일 제정



활용 가이드

I. 목적

CJ CGV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약관 작성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제정합니다.

II. 활용 방법

1. 본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에 기재된 내용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합니다.
2. 약관 작성 관련 업무 중 아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정보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1) CGV 이용약관 개정 시
→ 1 번 체크리스트 (16p)
- (2) 지류형 상품권(영화관람권 등) 후면 문구 변경 또는 신규 작성 시
→ 2 번 체크리스트 (17p)
- (3) 신유형 상품권(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영화관람권, 매점 콤보, 팝콘, 음료, 스낵 등) 하단 이용안내 문구 변경 또는 신규 작성 시
→ 3 번 체크리스트 (17p)

III. 체크리스트 점검 요령

1. 체크리스트에 명시된 세부 사항에 대해 그 위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아래사항을 확인 합니다.

- ‘○’로 체크한 경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 ‘X’로 체크한 경우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시거나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 ‘△’로 체크하신 경우 컴플라이언스파트로 문의 바랍니다.

2. 본 체크리스트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규의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3. 해당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써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4. 기타 체크리스트 내용,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컴플라이언스파트(cgv.cp@cj.net)로 문의 바랍니다.

공정한 약관 작성 가이드라인 목차

I. 약관의 개요 -----	4
1. 약관의 의미 등 -----	4
2. 불공정 약관 규제 -----	5
3. 위반에 대한 제재 -----	5
II. 불공정 약관의 유형 -----	6
1. 불공정 약관의 의미 -----	6
2. 불공정 약관 판단기준 -----	6
III. 공정위 표준약관 안내 -----	10
1. 공정위 표준약관 소개 -----	10
2. 영화관람 표준약관 -----	10
3.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	11
4.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	12
IV. 공정한 약관 작성 체크리스트 -----	14
1. 일반적인 약관 체크리스트 -----	14
2. 지류형 상품권 약관 체크리스트 -----	15
3. 신유형 상품권 약관 체크리스트 -----	16

1. 약관의 개요

1. 약관의 의미 등

(1) 약관의 의미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약관의 성립요건

-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준비할 것
- ② 사전에 준비할 것
- ③ 다수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위한 것
- ④ 계약의 내용에 관한 것일 것

※ 약관의 예시

CGV 이용약관, 영화관람권의 후면 문구, 주차장 이용약관 등

(3) 약관의 작성 방법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약관의 해석

- ① 약관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③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개별 약정의 우선)

2. 불공정 약관 규제

(1)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약관 작성 주체인 사업자는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는 것이 현실인 바,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약관을 규제하고 있다.

(2)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히 무효이며,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전체를 무효로 한다.

3. 위반에 대한 제재

(1) 시정조치,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

(2) 자세한 사항은 CP 편람 p133 참조

II. 불공정 약관의 유형

1. 불공정 약관의 의미

불공정 약관이란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1)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와 (2) 개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불공정 약관 판단기준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① 의미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작성자가 상대방의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 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 원칙이다.

② 유형별 예시

	유형	예시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인터넷 유해정보의 차단은 인터넷 통신 사업자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서비스로 구분하고 소비자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 조항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에게 귀속해야 할 물건을 사업자의 소유로 정하는 조항
3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쌍방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4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조항을 둔 경우

(2)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① 의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렵거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면 해당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유형별 예시

가.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유형	예시
1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으로, 언제나 무효가 되는 절대적 조항	주차장내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약관
3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견본 등 표시와 다른 물건에 대한 책임 감면 조항	공급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

나.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예시)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에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정한 조항

다.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 금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계약을 강제로 유지시키거나, 사업자의 해제권 발생 및 행사를 용이하게 하거나 해제 효과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등 민법규정을 무시하여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 등은 무효로 한다.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 • 1 회라도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조항

라.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유형	예시
1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불인정하고 임대인만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
2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 3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수강자가 교습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교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 등

마.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유형	예시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임차인이 목적물을 넘겨준 시점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은행과의 거래약정 중 일부라도 위반할 때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3	고객이 제 3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영업을 양도한 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종의 영업활동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계약

4	사업자가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개인의 신용정보활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	--

바.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유형	예시
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가스공급시설의 매매 등으로 가스 사용자 변경 시 명의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종전 사용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변경된 가스사용자가 승계한다는 조항
2	고객의 의사표시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예약의 취소 변경 시 예약 전일 16 시까지 해당 예약을 한 곳으로 직접 가서 취소·변경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조항
3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의사표시의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항
4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	

사. 대리인의 책임 가중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대리인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아. 소송상 권리의 제한

고객에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조항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한 조항, 사업자가 인지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 등
-----	---

Ⅲ. 공정위 표준약관 안내

1. 공정위 표준약관 소개

(1) 공정위 표준약관의 의미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되는 약관을 의미한다.

(2) 공정위 표준약관의 종류

현재 공정위가 마련한 표준약관은 약 80 가지이며, 이 중 CGV에서 유의해야할 약관은 영화관람 표준약관,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영화관람 표준약관 등 이다.

2. 영화관람 표준약관 (2001.2.2. 제정)

(1) 영화관람 표준약관의 의미

공정위가 2001년 영화관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분쟁의 사전 방지 등을 목적으로 소비자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화관 입장 및 변경, 영화 상영 지체 및 중단 시의 환급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CGV는 환급 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본 표준약관보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주요 내용 (환급 관련)

입장권에 대한 환급 가능 시간 명시 (제3조)

-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 입장권 요금의 전액,
- 영화 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시까지 요청한 경우 입장권 요금 50%
- 영화 상영 시작 후 환급 요청 불가

영화상영 지체 및 중단의 경우에도 일정금액 보상 명시 (제4조)

- 영화 상영 시작이 영화상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입장권에 기재된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는 경우 입장권 요금, 1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 영화 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

3.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2019.5.15. 개정)

(1) 지류형 상품권의 의미

① 지류(종이 등에 인쇄한)로 발행된 상품권을 의미하며 금액상품권(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물품상품권(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용역상품권(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등 총 3 가지로 구분한다.

② CGV 영화관람권의 경우 지류형 상품권 중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바, 후면 문구를 작성하거나 유효기간, 잔액반환 등 기준을 정할 때에는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제 3 조)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 발행자
2. 권면액 (금액형 상품권에 한함)
3. 유효기간 <아래 (3) 참고>
4. 사용 후, 잔액의 환불 기준 <아래 (4) 참고>
5. 상사채권 소멸시효(5 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하 경우에 한함)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9.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경우)

② 시각장애인이 중요정보 사항에 대하여 점자 표기, QR코드 표시 등 그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제공 방법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기 시행을 위해 사업자단체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유효기간

① 지류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② 다만, 2012년 공정위의 불공정약관 심사시 CGV 영화관람권(종이, 모바일쿠폰 포함) 사용기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자진시정한 바 있으므로 유효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4) 잔액반환(제8조)

- ① 금액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 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잔액을 현금 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물품/용역상품권의 경우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 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 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4.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2015.3.27. 개정)

(1) 신유형 상품권의 의미

- ① 지류형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 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신유형 상품권이라 한다.
- ② 신유형 상품권은 저장 매체의 종류에 따라 전자형,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분 되며,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비정액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 내에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 는 상품권), 물품(용역)제공형 상품권(한정된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 된 신유형 상품권)으로 구분한다.
- ③ CGV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영화관람권 및 기프트콘(매점 콤보, 팝콘, 음료, 스낵 등) 등은 신유형 상품권 중 물품 및 용역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에 해당하는 바, 이용 안내 문구를 작성하거나 유효기간, 잔액반환 기준 등을 정할 때에는 본 약관에서 정 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표시사항(제4조)

발행자는 신유형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1. 발행자2. 구매가격(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3. 유효기간(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아래 (3) 참고>4. 사용조건(사용가능금액, 제공 물품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수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5. 사용가능 가맹점 |
|---|

6. 환불 조건 및 방법 <아래 (4) 참고>
7. 지급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8. 소비자피해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3) 유효기간(제5조)

	구분	유효기간	연장	비고
1	금액형	최소 1년 이상	1회 이상 연장 (연장 기간 3개월)	유효기간 도래 7일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고객에게 유효기간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부와 방법을 통지하여야 함
2	물품/용역 제공형	최소 3개월 이상		

(4) 환불(제7조)

- ①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구매액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미사용 전제)
- ② 유효기간 경과 전·후를 비교하여 아래 기준으로 환불해야 한다.

	구분	유효기간 경과 전	유효기간 경과 후	비고
1	금액형	100분의 60이상(1만원 이하 100분의 80)이상 사용 후 반환 요구시 잔액(구매액 기준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 반환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미사용 부분 잔액의 90% 반환	환불 요청 권리자 → 최종소지자
2	물품/용역 제공형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신유형 상품권과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		

IV. 공정한 약관 작성 체크리스트

1. 일반적인 약관 작성 체크리스트

※ CGV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정보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함

NO	약관 작성 체크리스트	○	X	△
1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 조항을 작성하였는가			
2	계약 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 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약관 조항을 작성하였는가			
3	약관의 변경 시 고객은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 또는 계약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가			
4	부당하게 사업자의 면책조항을 설정하지는 않았는가			
5	부당하게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을 설정하지는 않았는가			
6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조항을 설정하지는 않았는가			
7	부당한 고객의 권익 침해조항이 있지는 않은가			
8	부당한 의사표시 의제 조항이 있지는 않은가			
9	부당한 소제기 금지 조항이 있지는 않은가			

2. 지류형 상품권 약관 체크리스트

※ 영화관람권 등의 후면 문구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정보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함

NO	지류형 상품권 약관 체크리스트	O	X	△
	상품권 권면에 아래 사항을 표시하였는가			
1	'발행자' 를 명시하였는가			
2	'권면액' 을 명시하였는가 (금액형 상품권일 경우에 한함)			
3	'유효기간'을 명시하였는가 (영화관람권인 경우 2 년)			
4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을 명시하였는가			
5	소멸시효(5 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시하였는가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지금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8	소비자피해 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였는가			
9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경우)			

3. 신유형 상품권 약관 체크리스트

※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영화관람권, 매점 콤보, 팝콘, 음료, 스낵 등의 이용안내 문구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아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첨부하여 법무정보시스템을 통한 검토를 받아야 함

NO	신유형 상품권 약관 체크리스트	○	×	△
	상품권 발행시 아래의 사항을 표시하였는가			
1	'발행자' 를 명시하였는가			
2	'권면액' 을 명시하였는가 (금액형 상품권일 경우에 한함)			
3	'유효기간'을 명시하였는가 (금액형 : 최소 1년 이상, 물품/용역 제공형 : 최소 3개월 이상 영화관람권인 경우 2년)			
4	사용 후, 잔액 환불 기준을 명시하였는가			
5	소멸시효(5년) 이내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한 보상기준을 명시하였는가			
6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한 제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7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8	소비자피해 발생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을 명시하였는가			
9	제공되는 물품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의 경우)			